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기적으로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점검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41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기적으로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점검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1일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Ⅲ. 검토의견

1. 주기적으로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점검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때 범죄경력조회를 현행 재량인 것에서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u>확인하기 위하여</u> 관계 기관에 자료를 <u>요청할 수 있고</u>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u>할 수 있다</u> .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 ----- <u>직접 또는</u> ----- ----- <u>요청하는 등의 방법</u> 으로 2년에 1회 이상 점검· <u>확인하여야 하고</u> ----- <u>하여야 한다</u>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고 함)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함)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²⁾.

그런데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르면³⁾,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3) 「**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9. (생략)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

경우 중 하나로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
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행법과 같이 재량행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실효법」의 적
용 여부가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직업훈련교사는 훈련생과의 대면 교육을 통해 훈련생과 밀접한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파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여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훈련생을 두텁게 보
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아동복지법」

어 있는 경우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④ (생략)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8